

## 학생 홍보(간행)물에 관한 세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세칙은 본교의 면학풍토와 질서 및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, 제47조 및 학생준칙 제15조, 제16조, 제17조에 의거하여 본교 신문사 및 학생단체나 학생이 정기, 부정기적으로 간행물 또는 홍보물을 발간(게시)하고자 할 때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홍보물)** 이 세칙에서 홍보물이라 함은 총장으로부터 홍보물 제작, 발간 및 배부허가를 받고, 교내 외에 게시하는 현수막 및 게시물 등을 말한다.

**제3조(홍보물 게시범위)** 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범위

1. 본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, 예술, 체육행사
2. 학생단체가 주관하는 행사, 외부단체의 참가신청을 접수하여 행하는 행사

②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범위

1. ①항의 각 호에 준하는 행사
2. 학부(과)별, 학년별, 단위별 학생단체(동아리 등)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

③ 외부 단체행사를 위한 현수막의 게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게시물의 게시는 외부단체 대표자의 의뢰원을 지참하고 홍보물에 검인을 받은 단체에 한하여 입학홍보처장을 경유 총장이 허가한다.<개정 2021.7.22.>

④ 본교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다수의 학생들(동문, 향우회 등)이 친목행사를 위하여 연고가 있는 특정교수로부터 행사지도 책임에 대한 동의를 얻었을 경우의 게시물에 한하여 입학홍보처장은 이를 검토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.<개정 2021.7.22.>

**제4조(홍보물 제작·발간 게시 배부원 제출절차)** ①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게시내용을 기재하여 지도교수 확인을 거쳐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,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21.7.22.>

②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학부(과) 단위의 행사로서 학부(과) 지정게시판에 한하여 게시할 경우에는 해당 학부(과)장의 허가를 얻어 게시할 수 있다.<개정 2021.7.22.>

③ 허가원에 의거 허가서를 받은 단체는 홍보물을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 검인 받아 게시한다.<개정 2021.7.22.>

④ 모든 게시물은 지정된 게시판 이외에 게시할 수 없다.

**제5조(홍보물 제한매수)** 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수량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행사의 경우에는 2매로 하고 그 이외의 행사는 1매로 한정한다.

②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는 수량은 다음과 같다.

1.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 10매 이내
2. 학부(과) 및 단체의 경우 5매 이내
3. 외부단체의 행사(의뢰)일 경우 2매 이내

**제6조(홍보물 게시기간)** ① 홍보물게시는 행사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종료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.

② 행사 주관단체의 대표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게시 및 철거하여야 한다.

③ 위 제1·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의뢰시에 허가를 불허한다.

**제7조(홍보물 규격)** ① 현수막의 규격은 입학홍보처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.<개정 2007.9.1.><개정 2021.7.22.>

② 게시물의 색상은 흰 바탕에 흑색 또는 청색 글씨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8조(보호 및 책임)** ① 허가를 얻어 게시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준칙 제24조에 의거 처리한다.

② 입학홍보처장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홍보물을 지체없이 회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7.22.>

**제9조(대외홍보)** 본교 학생행사를 타 대학(교) 또는 외부에 홍보하고자 할 때에는 입학홍보처장은 홍보물에 검인을 날인하고, 타교 또는 외부단체대표에게 게시허가를 의뢰하는 의뢰원을 발부한다.<개정 2021.7.22.>

**제10조(외부의 광고 및 게시물)** 본교 내에 외부기관 또는 개인광고의 게시 홍보물 배포시에도 그 원안을 입학홍보처에 제출 입학홍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1.7.22.>

**제11조(간행물)** 이 세칙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모든 정기·부정기 간행물로서 인쇄, 프린터, 사진, 복사, 필기 등 그 제작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간행물을 말한다.

**제12조(신문사의 세칙)** ① 본교의 신문사 주관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신문사는 편집장을 포함, 공개시험에 의거 선발된 학생기자로 구성한다.

**제13조(간행물의 분류)** 간행물 종류에 따라 학생간행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

1. 대학교 단위의 신문간행물
2. 대학교 단위의 학생간행물
3. 학부(과) 및 학회 단위의 학생간행물
4. 각 단체 단위의 학생간행물

**제14조(대학교 단위의 신문간행물)** 대학교 단위 신문간행물은 신문사운영세칙에 따른다.

**제15조(대학교 단위의 학생간행물)** ① 대학교의 학생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 단체는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간행물 발간의 인쇄내역서, 편집계획서 및 예산서를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한다.<개정 2021.7.22.>

② 모든 원고는 해당 지도교수가 취합하여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, 사전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1.7.22.>

③ 예산의 지출원이 생겼을 때에는 입학홍보처장을 경유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.<개정 2021.7.22.>

**제16조(학부(과) 및 학회단위의 학생간행물)** ① 학부(과) 및 학회단위의 학생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단체는 간행물 발간의 인쇄내역서, 편집계획서, 예산서를 각 학부(과)장의 결재를 받아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한다.<개정 2021.7.22.>

② 소속 학부(과)장은 그 지도교수로 한다.

③ 모든 원고는 지도교수의 사전지도를 거쳐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1.7.22.>

④ 예산은 지출원인이 생겼을 때 소속학부(과)장의 결재를 받아 입학홍보처장을 경유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.<개정 2021.7.22.>

**제17조(단체(동아리, 동문, 향우회 등) 단체단위의 학생간행물)** ① 각 단체의 학생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단체는 발간물의 인쇄내역서, 편집계획서, 예산서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입학홍보처장에게 제출한다.<개정 2021.7.22.>

② 모든 원고는 지도교수를 거쳐 입학홍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1.7.22.>

③ 당해 각 단체 지도교수를 그 지도교수로 한다.

**제18조(기타 단위의 학생간행물)** 기타 제 단위의 학생간행물은 제8조를 준용한다.

**제19조(발간허가)** 본교 학생의 제 간행물 발간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입학홍보처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1.7.22.>

**제20조(편집, 지도)** 간행물의 편집 과정은 간행물별 지도교수가 각각 책임지도 한다.

**제21조(배포)** 모든 학생간행물은 배포 전에 지도교수를 경유 입학홍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1.7.22.>

**제22조(시행세칙의 유보)**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23조(개정)**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종합복지위원회 결의(재적위원과반수 찬성)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부 칙(2000. 3. 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1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9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7. 2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